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관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050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6일

발 의 자 : 최관술 의원(1명)

찬 성 자 : 김희걸, 김기대, 문영민, 한명희,
신원철, 김영한, 박기열, 김동승,
김용석(도봉), 성중기, 이현찬,
김진철, 김구현, 박호근, 황준환,
김선갑, 강구덕, 김경자(강서),
남재경, 이순자 의원(20명)

1. 제안 이유

서울시가 농수산물공사에 전액 출자하였고, 공익적 목적의 사업시행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농수산물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 골자

가. 사장의 해임기준을 추가(안 제7조)

나.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27조 삭제)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연임기준”을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를 “영 제7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임원) 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u>연임 기준</u>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58조제4항</u>에 따른다.</p> <p><u>제27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u></p> <p>제31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과태료의 금액은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u>영 제79조제1항</u>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u>질서위반 행위규제법</u>」을 따른다.</p> | <p>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연임 및 해임 기준</u>----- ----- <u>제58조제4항</u> 및 <u>제5항</u>--.</p> <p><u><삭 제></u></p> <p>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영 제79조를 준용한다.</u></p> |

- 연간 임차료 : 송파소방서(가락119안전센터)임차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가락동농산물검사소)임차료 + 서울시식품안전과(강서 관리동 4층 사무실)임차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강서지소)임차료
- 221,173천원 = 77,885천원 + 98,591천원 + 7,236천원 + 37,461천원
- 송파소방서(가락119안전센터) 임차료 : 77,885천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가락동농산물검사소) 임차료 : 98,591천원
- 서울시식품안전과(강서 관리동 4층 사무실) 임차료 : 7,236천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강서지소 사무실) 임차료 : 37,461천원
- 연간임차료 = 면적(㎡) × 2017년 감정가액 × 임차료율
- 면적 :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을 적용
- 감정가액 : 인근시설의 토지에 대한 재산감정가액 적용(식품상가 1층 점포 토지단가 적용)
- 임차료율 : 송파소방서 및 보건환경연구원(가락) 건물은 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3조(임대료 등)에 따라 소방서와 검사소는 재산감정가액의 5% 적용, 강서시장 식품안전과,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사용 사무실은 농수산식품공사 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7% 적용
- 임차료 : 임차료 천원이하 절사, 부가세 제외
-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자료 참조

(단위 : 천원)

| 구 분 | 면적(㎡) | 2017년 감정가액 | 임차료율 | 연간 임차료 |
|----------------------------|--------|------------|------|---------|
| 송파소방서(가락119안전센터) | 304.42 | 5,117 | 5% | 77,885 |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가락동농산물검사소) | 385.35 | 5,117 | 5% | 98,591 |
| 서울시식품안전과(강서 관리동 4층 사무실) | 68.46 | 1,510 | 7% | 7,236 |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강서지소 사무실) | 372.16 | 1,438 | 7% | 37,461 |
| 합 계 | | | | 221,173 |

- 주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2. 2017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3705-1280

e-mail : intezer@seoul.go.kr